

생활검열 요령(제30조 관련)

1. 생활검열

생활검열은 생활지도교수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
2. 장 소 : 생활실 및 담당청소구역

3. 검열준비

검열준비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.

가. 각 생활실 단위로 저녁점호 대형으로 정렬한다.

나. 청소정돈을 철저히 한다.

다. 용모, 복장을 단정히 한다.

4. 검열실시

가. 검열은 일상 저녁점호 요령에 준한다.

나. 필요에 따라 특정 생활실을 지정하여 특별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.

다. 검열결과 성적이 불량하면 재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.